

Ⅳ- 5	제 목	전기공사업 양도 후 시공 중인 공사		
회신일자	2008-08-04	회신방법	지정부 전자민원	
질 의 요 지				
○ 전기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중인 공사가 있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 발주자와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				
회 신 내 용				
○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○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자가 완공한 전기공사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·의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○ 이는 공사업의 양도·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할 당시에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및 완공한 공사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하며,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·의무도 함께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. ○ 따라서, 발주자, 양도인, 양수인이 합의하여 완공된 공사로써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양도인이 부담한다거나,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 그 공사를 양도인이 계속하여 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○ 왜냐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, 공사업을 양도한 이후 양도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				